##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1756

제출년월일 : 2014년 4월 3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업무를 「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」의 감사처리 절차에 포함시켜 진행함으로써 감사결과 공개를 위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감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'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'을 삭제(안 제2조)
- 나. 시민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'월 1회'에서 '분기별 개최'로 변경 (안 제6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: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별도 의견없음

(2) 조직담당관(위원회) : 별도 의견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해당 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별도 의견없음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진단) : 별도의견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・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2014. 2.13 ~ 3. 5) 결과 : 별도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구성、운영하는데"를 "구성、운영하는 데에"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6호)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중 "월 1회 개최"를 "분기별 개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감사행정에	제1조(목적)
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감사의	
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	
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	الارات دا- لم کرد
를 <u>구성·운영하는데</u> 필요한 사	<u>구성·운영하는 데에</u>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시민감	제2조(기능) ①
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	
의 및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	
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	<u>&lt;삭 제&gt;</u>
<u>5</u> . (생 략)	<u>4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6</u> . <u>기타</u>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	<u>5</u> . <u>그 밖에</u>
는 사항	
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한 심의대	<u>&lt;삭 제&gt;</u>
<u>상,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</u>	
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
제6조(회의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	제6조(회의운영) ①

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,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수시 개최한다. 다만,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, <u>분기별 개최를</u>
<b></b> ,
,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## <u>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</u> <u>사유서</u>

- 1. 비용발생 요인
  - 비용발생 요인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 -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
- 3. 미첨부 사유
  -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 : 감사담당관 주무관 권중석